

구미시 음식물류 폐기물의 발생억제,
수집·운반 및 재활용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구 미 시

구미시 음식물류 폐기물의 발생억제, 수집·운반 및 재활용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안 번호	
----------	--

제출연월일 : 2020. . .

제 출 자 : 구 미 시 장

1. 제안이유

- 가. 음식물류 폐기물의 주민부담률이 정부 지침에 따라 적정한 수준으로 상향 조정하고, 기존 조례의 무게 단위 대비 부피 단위의 음식물류 폐기물 수수료의 불합리성을 조정하고자 함
- 나. 음식물류 폐기물 배출 시 적정 방법으로 배출하도록 배출자의 의무를 구체적으로 명시함

2. 주요내용

- 가. 개별계량 방식 수수료 조정(안 별표 1)
- kg당 수수료를 10원 상향 조정
- 나. 납부필증 및 전용봉투 가격 조정(안 별표 1)
- 리터당 가격을 50원으로 조정
- 다. 음식물류 폐기물 배출시 배출자의 감량 의무 강조
(안 제10조제2항제1호)
- 라. 조정된 수수료는 2020년 7월 1일부터 적용

3. 조례안 : 붙임

4. 참고사항

가. 관계법령 : 「폐기물관리법」, 같은 법 시행령 및 시행규칙

「질서위반행위규제법」

나. 예산조치 : 별도조치 필요 없음

다. 합 의 : 감사담당관, 기획예산과, 일자리경제과와 합의되었음

라. 기 타 : 물가대책위원회 심의 완료, 신·구조문대비표(붙임)

구미시 음식물류 폐기물의 발생억제, 수집·운반 및 재활용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구미시 음식물류 폐기물의 발생억제, 수집·운반 및 재활용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3호 각 목 외의 부분을 다음과 같이 한다.

“음식물류 폐기물 다량배출사업장”(이하 “다량배출사업장”이라 한
다)이란 다음과 같다.

제10조 제목 외의 부분을 제1항으로 하고, 같은 항(중전의 제목 외의 부
분)을 다음과 같이 하며, 같은 조에 제2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①시장은 음식물류 폐기물을 효율적으로 수집·운반·재활용하기 위하
여 수거일·배출장소·배출용기·배출요령 등을 따로 정할 수 있다.

②법 제15조제1항에 따른 생활폐기물배출자는 다음 각 호의 방법으로
음식물류 폐기물을 배출하여야 한다.

1. 음식물류 폐기물은 그 양을 줄여서 시장이 정하는 배출방법에 따라
배출하여야 한다.

2. 음식물류 폐기물을 배출할 경우 시장이 정한 전용수거용기 또는 개
별계량장비에 담아 배출하되, 부피단위 전용용기 사용의 경우 용량
과 일치하는 납부필증을 시장이 지정하는 종량제봉투 판매소에서 구

입·부착하여야 한다.

3. 음식물류 폐기물 배출 및 수거방법은 별표2와 같다.

제12조의 제목 “(음식물류 폐기물 공동보관시설 또는 전용수거용기의 설치)”를 “(음식물류 폐기물 종량제 개별계량장비 또는 전용수거용기의 설치)”로 하고, 같은 조 제1항 중 “공동보관시설”을 “종량제 개별계량장비”로, 같은 항부터 제3항까지 중 “보관시설”을 각각 “종량제 개별계량장비”로 한다.

제15조의 제목 “(음식물류 폐기물 다량배출사업장의 음식물류 폐기물 배출·처리방법 등)”을 “(다량배출사업장의 음식물류 폐기물 배출·처리방법 등)”으로 하고, 같은 조 각 호 외의 부분 중 “음식물류 폐기물 다량배출사업장”을 “다량배출사업장”으로, “「폐기물관리법 시행규칙」(이하 “시행규칙”이라 한다) 제14조”를 “「폐기물관리법 시행규칙」 제14조”로 하며, 같은 조 제1호 중 “설치·운영자(이하 “다량배출사업장 위탁재활용자”라 한다)”를 “설치·운영자”로 한다.

제16조의 제목 “(음식물류 폐기물 다량배출사업장의 준수사항)”을 “(다량배출사업장의 준수사항)”으로 하고, 같은 조 각 호 외의 부분 중 “음식물류 폐기물 다량배출사업장”을 “다량배출사업장”으로 한다.

제18조제1항제4호 중 “제16조의 음식물류 폐기물”을 “제16조의”로 하고, 같은 조 제4항 중 “시장은 음식물류 폐기물”을 “시장은”으로 한다.

제19조를 다음과 같이 한다.

제19조(과태료의 부과기준) 시장은 법 제68조에 따른 과태료를 부과·징

수하며, 과태료의 부과기준은 영 제38조의4에서 정한 별표 8과 같다.

별표 1, 별표 2, 별지 제 1호서식 및 별지 제 2호서식을 별지와 같이 한다.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9조제3항 관련 별표 1의 개정규정은 2020년 7월 1일부터 적용한다.

음식물류 폐기물 수집·운반·처리 수수료 기준(제9조 관련)

1. 개별계량 방식 수수료

(단위:원/kg)

현 행	2020년 7월 1일부터
60	70

2. 음식물류 폐기물 납부필증 및 전용봉투 가격표

규 격		기간별 판매가격(원)			
봉 투	납부필증	현 행		2020. 7. 1부터	
		판매이윤	판매가격	판매이윤	판매가격
	3리터	5	60	13	150
	5리터	11	125	22	250
	10리터	22	250	45	500
	20리터	42	470	90	1,000
	60리터	126	1,410	270	3,000
	120리터	253	2,820	540	6,000
20리터		55	620	90	1,000

주) 1. 판매소 이윤은 납부필증 판매가격의 100분의 9범위 이하 적용
(판매소 이윤의 원단위 미만은 절사함)

2. 납부필증의 공급 및 판매 등의 사항은 「구미시 폐기물관리 조례」의
종량제 봉투관련 규정에 준한다.

3. 납부필증의 규격

가. 색상

부 피 별	적 용	색 상
3리터	부피단위	노랑색
5리터	"	연두색
10리터	"	주황색
20리터	"	초록색
60리터	"	파란색
120리터	"	분홍색

나. 표시내용 : 처리 수수료 납부증명서, 시마크, 구미시장, 용량 및 용도표시

다. 위조방지처리 : 위조방지 및 재사용금지 기능 삽입

라. 제작방법 : 규격별로 색상과 크기를 달리하여 호환되지 않도록 제작

마. 규격, 색상, 디자인은, 필요에 따라 변경 가능함

음식물류 폐기물 배출 및 수거방법 등(제10조 관련)

1. 음식물류 폐기물 배출 및 수거방법

가. 수거주기

- 격일수거를 원칙으로 한다.
- 다만,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경우 수거주기를 변경할 수 있다.

나. 배출장소

- 일반주택·소형음식점 : 주택 문 앞이나 상가건물 앞(문전 배출)
- 공동주택 : 공동주택 내에 설치된 거점수거용기에 배출
 - ※ 소형음식점은 250㎡이상의 다량배출사업장을 제외한 음식점을 말함

다. 배출시간 : 배출일 18시부터 24시까지

라. 배출용기 : 시장이 정하는 전용수거용기

마. 배출방법

- 일반주택·소형음식점 : 전용수거용기에 납부필증 부착 후 배출
- 공동주택 : 음식물 개별계량장비 또는 거점수거용기에 배출

2. 공동주택의 음식물류 폐기물 종량제 개별계량장비 설치 기준

60세대당 최소 1개 이상을 설치하여야 한다.(배출량에 따라 추가설치 가능)

단, 수집·운반처리업체와 상호계약에 따라 음식물류 폐기물을 처리하는 경우에는 상호협약에 따라 별도로 정할 수 있다.

3. 재활용 가능한 음식물류 폐기물의 품목 및 배출요령

가. 품목 : 식품쓰레기, 조리 전·후 음식물 찌꺼기

나. 배출요령

- 이물질을 제거하고, 물기는 최대한 제거하여 전용봉투 또는 수거용기에 물이 고여 있지 않도록 배출
- 염분이 많은 된장·고추장·간장·김치 등은 행구어 배출
- 비닐, 병뚜껑, 나무이쑤시개, 폐식용유, 티백 등 딱딱하거나 유해하거나 포장되어 재활용을 어렵게 하는 물질은 반드시 제거 후 배출

다. 음식물류 폐기물 배출시 넣으면 안되는 물질

- 과일류 : 견과류 껍데기와 핵과류의 씨
- 육 류 : 소, 돼지, 닭 등의 털 및 뼈다귀
- 어패류 : 생선뼈, 패각류, 복어내장
- 찌꺼기 : 각종 차 류(1회용 포함) 찌꺼기, 한약재 찌꺼기
- 기 타 : 돼지기름, 닭기름, 왕겨, 고추대, 옥수수대

음식물류 폐기물 발생 억제 및 처리 계획 [] 신고서
[] 변경신고서

※ 뒤쪽의 작성방법을 읽고 작성하시기 바라며, []에는 해당되는 곳에 √표를 합니다.

(앞쪽)

접수번호	접수일	처리기간	7일				
신고인	①상호(명칭)	②사업자등록번호					
	③성명(대표자)	④생년월일					
	⑤주소(사업장) (전화번호:)						
사업장 규모	[] 집단급식소: 1일평균 총급식인원 명						
	[] 음식점: 사업장 면적 m ²						
	[] 대규모점포: 사업장 면적 m ²						
	[] 농수산물도매시장(공판장·유통센터): 사업장 면적 m ²						
	[] 호텔·콘도: 객실 수 실						
음식물류 폐기물의 발생 억제 및 처리 계획							
⑦ 음식물류 폐기물 배출예상량		kg/월 (1일 kg)					
⑧ 발생억제계획							
⑨ 자가처리계획	⑩ 자가처리(가열·발효 등에 의한 건조 등)			⑪ 건조 등 부산물처리			
	처리방법	처리능력 (kg/일)	설치 신고일	처리량 (kg/일)	부산물 발생량 (kg/일)	처리방법	처리자
⑫ 자가재활용계획	재활용량(kg/월)		재활용방법			재활용장소	
⑬ 위탁재활용계획	위탁 재활용량 (kg/일)	위탁계약 비용 (원/kg)	위탁 업소명	업종	재활용 방법	위탁업소 주소·전화	
⑭ 변경사항	변경 전				변경 후		
⑮ 변경사유							

「폐기물관리법」 제15조의2제2항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16조의3제1항제1호 제16조의3제4항에 따라

음식물류 폐기물 발생 억제 및 처리 계획 [] 신고
[] 변경신고 를 합니다.

년 월 일

신고인 (서명 또는 인)

구미시장 귀하

(뒤쪽)

첨부서류	1. 신고를 하려는 경우: 폐기물 위탁처리계약서 사본(위탁하여 수집·운반 또는 재 활용하는 경우만 제출합니다) 2. 변경신고를 하려는 경우 가. 변경사유를 증명하는 서류 나. 음식물류 폐기물 발생 억제 및 처리 계획 신고증명서	수수료 없음
------	---	-----------

작성방법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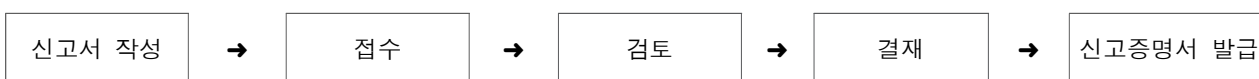
- ⑦란은 음식물류 폐기물의 예상 발생량을 적습니다.
- ⑧란은 음식물류 폐기물의 발생억제를 위한 방법을 적습니다.

예시)

집단급식소	칼끔 포장 식자재 구매 시차조리, 잔반저울 설치 메뉴 선호도 조사, 식사인원 파악시스템 도입 등
음식점 호텔·콘도 등	칼끔 포장 식자재 구매 소형복합찬기 이용 남은 음식 포장용기 비치 등
대규모점포	소포장 농·수·축산물 판매 칼끔포장 식자재 판매 등
농수산물도매시장 (공판장·유통센터)	반가공 농수산물 판매 양호한 농수산물 푸드뱅크 등 기부확대
공통	발생억제 방안에 대한 홍보

- ⑩란의 자가처리 항목 중 "처리방법"은 "1)가열에 의한 건조"나 "2)발효 또는 발효건조에 의한 퇴비화, 사료화 등의 방법을 적습니다.
- ⑩란의 자가처리 항목 중 "처리능력"은 설치 승인을 받거나 설치 신고한 폐기물처리시설의 용량을 적습니다. 다만, 폐기물처리시설 규모 미만의 시설을 설치한 경우 처리 가능한 처리용량을 적습니다.
- ⑩란의 자가처리 항목 중 "처리량"은 실제 처리하는 양을 적습니다.
- ⑪란의 부산물이란 건조나 발효 또는 발효건조의 결과로 발생하는 잔재물 등을 말하며, 부산물의 발생량 및 처리방법 등을 적습니다.
- ⑫란은 스스로 사료 또는 퇴비로 직접 재활용하는 경우에 적습니다.
- ⑬란은 재활용업자에게 위탁하여 재활용하는 경우에 적으며, 위탁계약비용이 명기된 계약서를 제출합니다.
- 변경신고의 경우 ①부터 ⑤까지, ⑭ 및 ⑮란만 적고, 변경사유를 증명하는 서류와 음식물류 폐기물 발생 억제 및 처리 계획 신고증명서를 제출합니다.

처리절차



신고인

구미시

음식물류 폐기물 관리대장

(단위: kg)

연월일	발생량	①자가처리내용								②자가재 활용내용				③위탁재 활용내용						보관량	결재	
		자가처리 방법	자가 처리 용량	자가 처리 누계	부산물처리					연월일	재활 용량	재 활용 방법	누계	연월일	위탁 처리량	운반자	재 활용 자	재 활용 방법	위탁 재 활용 누계			
					발생량	처리량	처리 방법	처리자	보관량													

작성방법

1. 폐기물의 발생 및 처리 시마다 날짜별로 작성하되, 누계는 매월 말일을 기준으로 합산하여 적고 연말에 최종누계를 적습니다.
2. ①란은 폐기물처리시설을 설치하여 스스로 처리하는 자가 적으며, 처리방법은 건조·발효·발효건조에 의한 방법 등으로 구분하여 적습니다.
3. ②란은 스스로 가축의 먹이나 퇴비로 직접 재활용하는 경우에 적습니다.
4. ③란은 폐기물을 위탁하여 재활용하는 경우에 그 세부사항을 적습니다.

신 · 구조문대비표

현행	개정안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2. (생략) 3. “<u>음식물류 폐기물 다량배출사업장</u>”이란 다음과 같다. 가. 나. (생략) 4. ~ 7. (생략) 제10조(음식물류 폐기물 배출자의 처리 협조) <u>법 제15조제1항에 따른 생활폐기물배출자는 수거가 가능한 지역을 대상으로 시장이 정한 별표 2의 배출 및 수거방법 등에 따라 음식물류 폐기물을 배출하여야 한다.</u> <u><신설></u>	제2조(정의) ----- -----. 1. 2. (현행과 같음) 3. “<u>음식물류 폐기물 다량배출사업장</u>”(이하 “<u>다량배출사업장</u>”이라 한다)이란 다음과 같다. 가. 나. (현행과 같음) 4. ~ 7. (현행과 같음) 제10조(음식물류 폐기물 배출자의 처리 협조) ①<u>시장은 음식물류 폐기물을 효율적으로 수집·운반·재활용하기 위하여 수거일·배출장소·배출용기·배출요령 등을 따로 정할 수 있다.</u> ②<u>법 제15조제1항에 따른 생활폐기물배출자는 다음 각 호의 방법으로 음식물류 폐기물을 배출하여야 한다.</u> 1. <u>음식물류 폐기물은 그 양을 줄여서 시장이 정하는 배출방법에 따라 배출하여야 한다.</u> 2. <u>음식물류 폐기물을 배출할</u>

제12조(음식물류 폐기물 공동보관 시설 또는 전용수거용기의 설치) ①시장은 법 제13조에 따라 생활폐기물배출자로 하여금 음식물류 폐기물 공동보관시설 또는 전용수거용기를 설치하게 할 수 있으며, 다수가 이용하는 공동주택의 보관시설 또는 수거용기에 대하여는 수집·운반효율을 증진시키기 위하여 기계식상차가 가능하도록 규격을 정하여 설치하도록 할 수 있다.

②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신축되는 공동주택과 다가구주택에 대하여 음식물류 폐기물을 재활용하기 위한 보관시설 또는 전용수거용기를 설치하도

경우 시장이 정한 전용수거용기 또는 개별계량장비에 담아 배출하되, 부피단위 전용용기 사용의 경우 용량과 일치하는 납부필증을 시장이 지정하는 종량제봉투 판매소에서 구입·부착하여야 한다.

3. 음식물류 폐기물 배출 및 수거방법은 별표2와 같다.

제12조(음식물류 폐기물 종량제 개별계량장비 또는 전용수거용기의 설치) ①-----

----- 종량제 개별계량장비 -----

----- 종량제 개별계량장비 -----

-----.

②-----

----- 종량제 개별계량장비 -----

록 할 수 있으며, 사업시행자와
음식물류 폐기물 재활용에 필요
한 사항을 협의하여 시행할 수
있다.

③시장은 제1항과 제2항에 따라
음식물류 폐기물 수거를 위하여
설치하는 보관시설 또는 수거용
기가 기준에 부적합한 경우에는
개선·대체 등의 조치를 명할
수 있다.

제15조(음식물류 폐기물 다량배출
사업장의 음식물류 폐기물 배출
· 처리방법 등) 음식물류 폐기
물 다량배출사업장으로서 생활
폐기물배출자에 해당하는 자는
법 제13조, 영 제7조제2항 및
「폐기물관리법 시행규칙」(이
하 “시행규칙”이라 한다) 제14
조에 따라 다음 각 호의 방법으
로 음식물류 폐기물을 재활용하
거나 처리하여야 한다.

1. 재활용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음식물류 폐기물을 재활용하
는 폐기물처리업자, 폐기물처
리 신고자 또는 폐기물 재활
용시설 설치·운영자(이하

③ —————
 —————
 —————
 —————
 종량제 개별계량장비
 —————
 —————
 —————
 —————

제15조(다량배출사업장의 음식물
류 폐기물 배출·처리방법 등)
다량배출사업장-----

「폐기물관리법 시행규칙」 제
14조-----

1. -----

----- 설치 · 운영자 -----

“다량배출사업장 위탁재활용
자”라 한다)에게 위탁하여 재
활용하거나 스스로 사료·퇴
비 등으로 재활용하여야 한다.

2. 3. (생략)

제16조(음식물류 폐기물 다량배출
사업장의 준수사항) 음식물류
폐기물 다량배출사업장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준수하여야 한
다.

1. ~ 5. (생략)

제18조(음식물류 폐기물 발생억
제, 수집·운반 및 재활용을 위
한 조치) ①시장은 다음 각 호
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법 제68조에 따라 과태료를 부
과할 수 있다.

1. ~ 3. (생략)

4. 제16조의 음식물류 폐기물
다량배출사업장의 준수사항을
따르지 않은 경우

②·③ (생략)

④시장은 음식물류 폐기물 다량
배출사업장이 밀집된 지역에서
의 재활용을 촉진하기 위하여
공동으로 수분을 건조하거나 공

-----.

2. 3. (현행과 같음)

제16조(다량배출사업장의 준수사
항) 다량배출사업장-----

--.

1. ~ 5. (현행과 같음)

제18조(음식물류 폐기물 발생억
제, 수집·운반 및 재활용을 위
한 조치) ①-----

-----.

1. ~ 3. (현행과 같음)

4. 제16조의 -----

②·③ (현행과 같음)

④시장은 -----

동으로 수거·재활용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한 필요한 지원과 조치를 강구하여야 한다.

제19조(과태료의 부과기준 및 절차) 과태료의 부과 및 징수절차에 관한 사항 등에 관하여는 법·시행령·시행규칙 및 조례에 규정된 사항을 제외하고는 「질서위반행위규제법」과 구미시 재무회계 관련 규정에 따른다.
(생략)

-----.

제19조(과태료의 부과기준) 시장은 법 제68조에 따른 과태료를 부과·징수하며, 과태료의 부과기준은 영 제38조의4에서 정한 별표 8과 같다. (현행과 같음)

관계법령

□ 「폐기물관리법」

제14조(생활폐기물의 처리 등) ① ~ ④ 생략

⑤ 특별자치시장, 특별자치도지사, 시장·군수·구청장은 제1항에 따라 생활폐기물을 처리할 때에는 배출되는 생활폐기물의 종류, 양 등에 따라 수수료를 징수할 수 있다. 이 경우 수수료는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는 바에 따라 폐기물 종량제(從量制) 봉투 또는 폐기물임을 표시하는 표지 등(이하 "종량제 봉투등"으로 한다)을 판매하는 방법으로 징수하되, 음식물류 폐기물의 경우에는 배출량에 따라 산출한 금액을 부과하는 방법으로 징수할 수 있다

⑥ ~ ⑨ 생략

제15조(생활폐기물배출자의 처리 협조 등) ① 생활폐기물이 배출되는

토지나 건물의 소유자·점유자 또는 관리자(이하 "생활폐기물배출자"라 한다)는 관할 특별자치시, 특별자치도, 시·군·구의 조례로 정하는 바에 따라 생활환경 보전상 지장이 없는 방법으로 그 폐기물을 스스로 처리하거나 양을 줄여서 배출하여야 한다.

② 생활폐기물배출자는 특별자치시, 특별자치도, 시·군·구의 조례로 정하는 바에 따라 제1항에 따라 스스로 처리할 수 없는 생활폐기물을 종류별, 성질·상태별로 분리하여 보관하여야 한다.

제15조의2(음식물류 폐기물 배출자의 의무 등) ① 음식물류 폐기물을 다량으로 배출하는 자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는 음식물류 폐기물의 발생 억제 및 적정 처리를 위하여 관할 특별자치시, 특별자치도, 시·군·구의 조례로 정하는 사항을 준수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음식물류 폐기물 배출자는 음식물류 폐기물의 발생 억제 및 처리 계획을 환경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특별자치시장, 특별자치도지사, 시장·군수·구청장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신고한 사항 중 환경부령으로 정하는 사항을 변경할 때에도 또한 같다.

③ 제1항에 따른 음식물류 폐기물 배출자는 제14조제1항 또는 제18조제1항에도 불구하고 발생하는 음식물류 폐기물을 스스로 수집·운반 또는 재활용하거나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게 위탁하여 수집·운반 또는 재활용하여야 한다.

1. 제4조나 제5조에 따른 폐기물처리시설을 설치·운영하는 자
2. 제25조제5항제1호에 따른 폐기물 수집·운반업의 허가를 받은 자
3. 제25조제5항제5호부터 제7호까지의 규정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폐기물 재활용업의 허가를 받은 자
4. 폐기물처리 신고자(음식물류 폐기물을 재활용하기 위하여 신고한 자로 한정한다)

④ 제1항에 따른 음식물류 폐기물 배출자는 각각의 사업장에서 발생하는 음식물류 폐기물을 환경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공동으로 수집·운반 또는 재활용할 수 있고, 폐기물처리시설을 공동으로

설치·운영할 수 있다. 이 경우 공동 운영기구를 설치하고 그 대표자 1명을 선정하여야 한다.

□ 「폐기물관리법 시행령」

제8조의4(음식물류 폐기물 배출자의 범위) 법 제15조의2제1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를 말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가 법 제17조제2항에 따른 사업장폐기물배출자인 경우에는 제외한다.

1. 「식품위생법」 제2조제12호에 따른 집단급식소(「사회복지사업법」 제2조제4호에 따른 사회복지시설의 집단급식소는 제외한다) 중 1일 평균 총급식인원이 100명 이상(「유아교육법」에 따른 유치원에 설치된 집단급식소는 1일 평균 총급식인원이 200명 이상)인 집단급식소를 운영하는 자. 이 경우 1일 평균 총급식인원의 구체적인 산출방법 등은 환경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한다.
2. 「식품위생법」 제36조제1항제3호에 따른 식품접객업 중 사업장 규모가 200제곱미터 이상인 휴게음식점영업 또는 일반음식점영업을 하는 자. 다만, 음식물류 폐기물의 발생량, 폐기물 재활용시설의 용량 등을 고려하여 특별자치시, 특별자치도 또는 시·군·구의 조례로 다음 각 목의 사업장 규모 또는 제외 대상 업종을 정하는 경우에는 그 조례에 따른다.

가. 사업장 규모(200제곱미터 이상으로 한정한다)

나. 휴게음식점영업 중 일부 제외 대상 업종

3. 「유통산업발전법」 제2조제3호에 따른 대규모점포를 개설한 자
4. 「농수산물 유통 및 가격안정에 관한 법률」 제2조제2호·제5호 또는 제12호에 따른 농수산물도매시장·농수산물공판장 또는 농수산물종합유통센터를 개설·운영하는 자
5. 「관광진흥법」 제3조제1항제2호에 따른 관광숙박업을 경영하는 자
6. 그 밖에 음식물류 폐기물을 스스로 감량하거나 재활용하도록 할 필요가 있어 특별자치시, 특별자치도 또는 시·군·구의 조례로 정하는 자

□ 「폐기물관리법 시행규칙」

제14조(폐기물 처리 등의 구체적인 기준·방법) 영 제7조제2항에 따른 폐기물의 처리에 관한 구체적인 기준과 방법은 별표 5와 같다.

【별표5】 폐기물의 처리에 관한 구체적 기준 및 방법(제14조 관련)

2. 음식물류 폐기물의 기준 및 방법

다. 처리의 경우

3) 영 제8조의4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가 음식물류 폐기물을 스스로 감량하는 경우에는 단독이나 공동으로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방법으로 감량하여야 하며, 감량된 음식물류 폐기물은 법 제13조의2에 따라 재활용하여야 한다.

가) 가열에 의한 건조의 방법으로 부산물의 수분함량을 25퍼센트 미만으로 감량하여야 한다.

나) 발효 또는 발효건조나 퇴비화·사료화 또는 부숙의 방법으로
처리하여 부산물의 수분함량을 40퍼센트 미만으로 하여야 한다.

□ 「질서위반행위규제법」

제5조(다른 법률과의 관계) 과태료의 부과·징수, 재판 및 집행 등의
절차에 관한 다른 법률의 규정 중 이 법의 규정에 저촉되는 것은
이 법으로 정하는 바에 따른다.

소 관 부 서		자원순환과
입 안 자	과 장	김 덕 종
	담 당	이 금 향
	담 당 자	김 상 미 (480-5223)